

2014년 상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

□ 추진목적

- 재직 중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 개발 및 경력 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□ 주요내용

- 지원 자격: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
 -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(휴직, 교육파견 등 제외)
 -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
- 대상 분야: 제한 없음(개인이 희망한 모든 창업분야)
- 휴직기간 및 처우
 - 휴직기간: 1년6개월 ~ 3년6개월 (의무휴직기간: 1년6개월, 6개월 단위 최대 2년 연장 가능)
 - 급여: 최초 1년간 월 기준급+역량급 100%만 지급(이후 기간은 무급휴직)
- 선발절차
 - 신청 : 희망자가 신청서류(창업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) 작성 후 시스템 등록
 - 심의위원회 심의 : 예심의(소속기관), 본심의(인재경영실 인사담당)
 - 심의기준
 - 1차심의 : 사업계획서 상 사업성, 준비도, 적정성 및 창업가 정신 등을 평가
 - 2차심의 : 1차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적합, 부적합 검증(결격사유)
 - 협약 체결 : 소속 기관장
- 추진일정

구분	일자	비고
공고	5. 9	전사문서
희망자 신청	5. 9 ~ 5.16	BIT ERP시스템
1차심의	5.19~5.21	소속기관
2차심의	5.22~5.26	인재경영실 인사담당
최종 선정	5.27	인재경영실 인사담당
1일 워크숍	5.29	인재경영실 인사담당
협약 체결	5.29~5.30	소속기관
휴직 발령	6. 1	소속기관